

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9-143
----------	-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1. 제안 이유

인구증가 지원사업의 본질적인 사항은 조례로 그 대강을 정하여 군민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하고,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기준 등 기술적 사항이나 수시로 변하여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하여 인구증가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군내 인구증가에 이바지하고자 전부개정 함

2. 주요내용

가. 인구증가 지원사업을 정함(안 제2조)

- 1) 임신과 출산 지원
- 2) 6세 미만 영유아의 보호와 양육 지원
- 3) 세 자녀 이상 자녀를 둔 세대 지원
- 4) 전입세대의 정착 지원
- 5) 그 밖에 군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

나. 지원대상의 세부기준 및 신청·지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함(안 제2조 제2항, 제3조)

다. 이중지원 제한을 정함(안 제4조)

- 1) 같은 지원사업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금액 만큼 빼고 지원

라. 지원 중단 및 환수를 정함(안 제5조)

마. 인구증가 유공자, 단체 등에 보상을 정함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

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예산 2,139백만원 확보 예정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합의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19. 10. 29.~11. 18.

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 : 붙임

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거창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시행하는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인구증가 지원사업) ①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거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의 인구 증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구증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임신과 출산 지원

가. 출산 축하금

나.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 장려금

다. 임신축하 기념품 등

2. 6세 미만 영유아의 보호와 양육 지원: 양육지원금 지원 등

3. 세 자녀 이상 자녀를 둔 세대 지원: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등

4. 전입세대의 정착 지원

가. 전입정착금

나. 빈집정비 지원

다. 전입 고등학생·대학생 장학금·학자금, 대학생 생활관비 등 지원

5. 그 밖에 군 인구증가를 위한 사업

가. 국적취득자 지원

가. 청년 주택 전세·구입 자금 이자 지원 등

② 제1항에 따른 인구증가 지원사업의 대상·금액 등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3조(신청 및 지원 절차) 제2조에 따른 인구증가 지원사업의 신청 및 지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제4조(이중지원 제한)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같은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수혜금액만큼 빼고 지급한다.

제5조(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) ① 지원 대상자가 전출,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.

②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한다.

제6조(보상) 군수는 인구증가 지원사업 추진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유관기관·단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태아·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중일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거나 신청한 출산장려금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거나 신청한 것으로 본다.

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가. 비용 발생 요인

출산축하금 및 양육지원금 증액 지원, 전입정착금 증액 지원,
청년 주택 전세·구입 자금 이자 지원

나. 관련조문 : 제2조(인구증가 지원사업)

2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)	합계
군비	2,139	2,139	2,139	2,139	2,139	10,695

3. 관련 의견

출산축하금 및 양육지원금 증액 지원으로 출산율을 제고하고, 전입 정착금 증액으로 유동인구 정착을 지원하며, 청년의 주택 전세·구입 자금 이자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과 청년 유출 문제 해결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항 목	상 세 내 역
1. 출산축하금 지원 : 450백만원	◦ 첫째 1,000천원×100명=100,000천원 ◦ 둘째 2,000천원×100명=200,000천원 ◦ 셋째 이후 3,000천원×50명=150,000천원
2. 양육지원금 지원 : 1,300백만원	◦ 첫째 100천원×100명×20월=200,000천원 ◦ 둘째 100천원×100명×20월=200,000천원 ◦ 셋째 이후 300천원×50명×60월=900,000천원
3. 전입 정착금 지원 : 189백만원	◦ 1인 세대 100천원×900세대=90,000천원 ◦ 2인 세대 200천원×200세대=40,000천원 ◦ 3인 세대 300천원×80세대=24,000천원 ◦ 4인 이상 세대 500천원×70세대=35,000천원
4. 청년 주택 전세·구입 자금 이자 지원 : 200백만원	◦ 1,000천원×200명

작성자 : 인구교육과장 이병주